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24호

「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10월 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상향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,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삭제(안 제1조)
- 나. 고문변호사 위촉 근거 명확화(안 제2조)
 -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개업 중인 자를 위촉
- 다. 고문변호사 수당 상향하여, 자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(안 제7조)
 - (기존) 15만원 ⇨ (변경) 20만원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”를 “고문변호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개업”을 “「변호사법」에 따라 개업”으로, “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”를 “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로 위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5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흥군의 회 <u>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촉) ① 고흥군의회 의장 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<u>개업 중 인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<u>15만원</u>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 <u>고문변호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위촉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변호사법</u>」에 따라 개업 ----- ----- <u>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</u>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수당) ① ----- ----- <u>20</u> ----- 만원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